제259회 임시회
2007. 4. 18

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4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4월 11일

□ 제안 이유

○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,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,
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4항 신설)

나.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(안 제17조제2항)

○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

○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,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

다.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(안 제21조제10호 신설)

○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

라.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개선(안 제22조제2항 및 제10항)

○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,임신 16주 이후에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

라 차등을 두어 유산·사산휴가를 주도록 함

마.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(안 별표2)

○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도록 함

○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

□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″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″에서 규정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,
- ″혈액관리법″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사회 헌혈운동의 자진참여,
-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″모자보건법″등 이들 개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은

″지방공무원 복무규정″을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 하다고 사료됨.